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 조 례 안 상 정

(조례 5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15~24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5~2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26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15~27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	21
2015~28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24
----------	-----------

제출연월일	2015. 5. 0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규제개혁추진단 : 폐지(안 제3조)
- 나. 규제개혁 분장사무 업무 이관 ⇒ 기획감사실(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3. 31. ~ 2015. 4.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목 “(실장·과장·단장의 직급 등)”을 “(실장·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3조 제목 “(실·과단의 설치)”를 “(실·과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1호의2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1호의2)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실장·과장·단장의 직급 등) ①  <u>군</u> 본청 및 직속기관의 <u>실장·과장·단장</u>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u>실·과·단</u>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소장,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            -----<u>실장·과장</u>            -----<u>실·과</u>            -----            -----.</p> <p>② -----            -----            -----            -----</p>
<p>제3조(실·과·단의 설치) ① <u>군</u>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규제개혁추진단</u>, <u>기획감사실</u>,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산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승강기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p> <p>② <u>실장·과장·단장</u>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u>규제개혁추진단장</u> : <u>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u></p> <p>1의2. <u>기획감사실장</u>            가. ~ 바. (생략)</p> <p><u>&lt;신설&gt;</u></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            ----- <u>기획감사실</u>,            -----            -----            -----            -----            -----            -----.</p> <p>② <u>실장·과장</u>-----            -----.</p> <p><u>&lt;삭제&gt;</u></p> <p>1. -----            가. ~ 바.(현행과 같음)</p> <p><u>사.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u></p>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25
----------	-----------

제출연월일	2015. 5. 0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추가 2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특별휴가 대상을 신설함(안 제23조제11항)

-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
- (신설)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조직개편사항 반영, 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 자 ⇒ 사람, 잔무 ⇒ 남은 업무, 행정안전부령 ⇒ 총리령
- 여자 ⇒ 여성, 전염병 ⇒ 감염병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3. 23. ~ 4. 12.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귀청한 때”를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1조 중 “잔무처리”를 “남은 업무 처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8조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연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감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25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 4. (생략)</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② (생략)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p>	<p>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의2(비밀엄수) ----- -----<u>사람은</u>----- ----- ----- 1. ~ 4. (현행과 같음)</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무실로 돌아왔을 때</u>----- -----</p>	<p>제9조(겸임근무) ① ----- -----<u>사람은</u>----- ----- ----- ② -----<u>사람이</u>----- -----<u>경우</u>----- -----</p>	<p>제10조(파견근무) ① ----- -----<u>사람은</u>----- ----- ----- ② -----<u>사람이</u>----- ----- ----- ③ ----- -----</p>

현 행	개 정 안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u>잔무처리</u>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 <u>남은 업무 처리</u> ----- -----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총리령) ----- -----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삭 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3월이상6월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3일</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6월이상1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6일</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년이상2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9일</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년이상3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2일</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년이상4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4일</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년이상5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7일</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년이상6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0일</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6년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21일</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6월미만	3일	6월이상1년미만	6일	1년이상2년미만	9일	2년이상3년미만	12일	3년이상4년미만	14일	4년이상5년미만	17일	5년이상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6월미만	3일																		
6월이상1년미만	6일																		
1년이상2년미만	9일																		
2년이상3년미만	12일																		
3년이상4년미만	14일																		
4년이상5년미만	17일																		
5년이상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현행	개정안
<p>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p> <p>1.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p>	<p>&lt;삭 제&gt;</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③ ~ ④ (생략) ⑤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략)</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연가 ----- ----- ----- ----- ----- ⑥ (현행과 같음)</p>
<p>제21조(병가) ① (생략)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② ~ ③ (생략)</p>	<p>제21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 1. ----- 2. <u>감염병에 걸려</u>-----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공가) <u>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u>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p> <p>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p> <p>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p> <p>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p> <p>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p> <p>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p> <p>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p> <p>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p> <p>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p> <p>②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게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⑥ ~ ⑨ (삭제조항)</p> <p>⑩ (생략)</p> <p>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각각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며,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할 수 없다.</p> <p>2.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부서에서는 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③ 여성공무원-----</p> <p>-----</p> <p>-----</p> <p>-----</p> <p>④ -----여성공무원-----</p> <p>-----</p> <p>⑤ -----</p> <p>-----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p> <p>-----</p> <p>⑥ ~ ⑨ (삭제조항)</p> <p>⑩ (현행과 같음)</p> <p>⑪ 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p> <p>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p> <p>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p> <p>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p>

현행	개정안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조례에서-- -----

##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26
----------	-----------

제출일자	2015. 5. 0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나.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 교육여건 개선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라.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 2,604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3. 13. ~ 4. 03.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결과 요약서 붙임)

○ 의견제출자 : 399(단체 6, 개인 393)

○ 의견 미반영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창남초등학교 학부모회 외 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상급식비를 없애기 위해 줄속으로 만든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조례 반대</li><li>○ 정부의 공식 업무절차를 밟지 않고 공공기관이 불법적으로 신청 받음.</li><li>○ 지금 필요한 것은 무상급식</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견제출한 무상급식 내용과는 다른 별개의 조례안으로 행정 절차법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임</li><li>○ 제출의견은 조례안 내용과 무관하여 입법내용에 반영될 수 없음</li></ul>	미반영



##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① 세출 ----- 2,604백만원
  - ◆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 1,200백만원
    - 서민자녀 및 소외계층(저소득 250% 이내)  
: 연 500,000원 × 2,400명 = 1,200백만원
  - ◆ 서민자녀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 : 360백만원
    - 600,000원 × 600명 = 360백만원
  - ◆ 서민자녀 특기적성 교육 지원 : 310백만원
    - 1회/103,000원 × 50회 × 60명 = 310백만원
  - ◆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 224백만원
    - 1,600,000원 × 140명 = 224백만원
  - ◆ 진로 프로그램 운영 : 162백만원
    - 1인/245,000원 × 220명 × 3회 = 162백만원
  - ◆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 : 200백만원
    - 1개반/720,000원 × 70개반 × 4회 = 200백만원
  - ◆ 서민자녀 영어캠프 운영 : 147백만원
    - 600,000원 × 120명정도 × 2회 = 147백만원

나. 추계의 결과

구분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도비		1,302	1,302	1,302	1,302	1,302	6,510
	군비		1,302	1,302	1,302	1,302	1,302	6,510
	소계(a)		2,604	2,604	2,604	2,604	2,604	13,020
세입	도비		1,302	1,302	1,302	1,302	1,302	6,510
	군비		1,302	1,302	1,302	1,302	1,302	6,510
	소계(b)		2,604	2,604	2,604	2,604	2,604	13,020
총 비 용(a-b)			-	-	-	-	-	-

3. 관련의견 : 없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세출			13,020	2,604	2,604	2,604	2,604	2,604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1,200	1,200	1,200	1,200	1,200
		서민자녀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360	360	360	360	360
		서민자녀 특기적성 교육 지원		310	310	310	310	310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225	225	225	225	225
		진로 프로그램 운영		162	162	162	162	162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		200	200	200	200	200
		서민자녀 영어캠프 운영		147	147	147	147	147

작성자 : 창조산업과장 이 상 준

#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재원조달	13,020	2,604	2,604	2,604	2,604	2,604
의존 재원	소 계	6,510	1,302	1,302	1,302	1,302
	도비	6,510	1,302	1,302	1,302	1,302
자체 수입	소 계	6,510	1,302	1,302	1,302	1,302
	지방세	6,510	1,302	1,302	1,302	1,30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관련 의견 : 없음

3. 협의사항 : 없음

4. 작성자 : 창조산업과장 이 상 준



##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27
----------	-----------

제출연월일	2015. 5. 0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가조온천지구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군유 온천공의 온천수 급수권자를 정함(안 제3조)

○ 급수권자 : 군수

#### 나.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온천수 공급급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급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함.

#### 다.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시설분담금 납부
- 시설분담금은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설치에 사용

#### 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 사용료를 징수
-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기본요금과 초과 요금의 합계로 징수

#### 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온천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4. 09. ~ '15. 4. 2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군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유 온천공"이란 온천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군수가 소유한 온천공을 말한다.
2. "온천이용자"란 군수와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4. "송·배수관"이란 군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매설한 관로를 말한다.

제3조(급수권자) 군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의 급수권은 군수가 가진다.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가조온천지구로 한다.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 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온천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급수계약)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공동급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용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군수와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 계약의 변경 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축·개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⑤ 개인·단체·법인 등이 소유한 사유 온천공으로부터 직접 온천수를 공급받을 수 없으며, 사유온천공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급수권자와 온천수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급수 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등)**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군수가 실시한다.

- ②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신청인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 신청자가 부담한다.
- ④ 제1항의 급수공사는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 설비 공 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
- ⑤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교체·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시설분담금)** ① 제7조의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군수는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로 징수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온천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③ 온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계량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장치에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5. 단수 조치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온천수를 판매 또는 허가된 장소 이외에 사용한 경우
7. 온천을 허가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쇄조치할 수 있다.

1.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제12조(온천공의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균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 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및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시설 분담금

구경	구분	금액	비고
13mm		160,000원	
20mm		360,000원	
25mm		640,000원	
32mm		1,000,000원	
40mm		1,400,000원	
50mm		2,600,000원	
75mm		4,000,000원	
100mm		9,000,000원	
150mm		20,000,000원	
200mm		30,000,000원	

※ 구경 확대의 경우에는 구경별 분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별표 2]

온천수 사용요금표(월)

구분 업종	기본요금		초 과 요 금					
	사용량 (m³)	사용료 (원)	1단계 초과		2단계 초과		3단계 초과	
			사용량 (m³)	사용료 (원)	사용량 (m³)	사용료 (원)	사용량 (m³)	사용료 (원)
숙박업소	100까지	100,000	101~ 200	1,100	201~ 500	1,200	501이상	1,300
의료관광 호텔	500까지	500,000	501~ 1,000	1,200	1,001~ 2,000	1,300	2,001이상	1,400
일반 목욕장	500까지	450,000	501~ 1,000	1,000	1,001~ 2,000	1,100	2,001이상	1,300
공공 목욕장	500까지	100,000	501~ 1,000	300	1,001~ 2,000	400	2,001이상	500

1. 각 단계별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는 단계별 요금 적용
2. “공공목욕장”이란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설치한 욕장을 말함
3. 업종구분
  - 숙박업소 : 관광호텔,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 의료관광호텔 : 의료관광이 가능한 시설
  - 일반목욕장 : 공중탕, 가족탕, 한증탕
  - 공공목욕장 : 공공목욕탕, 공공족욕장
4. 그 밖에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천수는 무료로 제공한다.

[별표 3]

은천수 계량기 손료(월)

구경 \ 구분	손 료	산출기초
20mm	4,150원	299,000원 ÷ 72개월
25mm	4,830원	348,000원 ÷ 72개월
40mm	5,830원	420,000원 ÷ 72개월
50mm	7,370원	531,000원 ÷ 72개월
65mm	7,580원	546,000원 ÷ 72개월
80mm	8,330원	600,000원 ÷ 72개월
100mm	9,250원	666,000원 ÷ 72개월
125mm	10,430원	751,000원 ÷ 72개월
150mm	17,930원	1,291,000원 ÷ 72개월
200mm	19,220원	1,384,000원 ÷ 72개월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28
----------	-----------

제출연월일	2015. 5. 07.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수승대 진출입 자동화시스템 설치, 시설 운영경비 증가 등에 따른 수승대 시설이용료 조정 및 징수 기준 마련

### 2. 주요내용

- 가. 주차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시설이용료 징수 금액 변경 및 축제극장 시설이용료 징수 기준 신설(안 별표 1)
- 나.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8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4. 20. ~ 5.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67조”로 한다.

제2조 중 “2번지”를 “2”로 한다.

제4조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 제5호) 중 “인”을 “명”으로 “동일”을 “같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 제8호) 중 “썰매장”을 “썰매장, 축제극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다.”를 “같되,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축제극장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식은 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관광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차량과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후단을 삭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호서식·제1호의2서식·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관광진흥법</u> 」 제67조 제1항에 따른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관광진흥법</u> 」 제67조 ----- ----- -----
제2조(위치)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u>2번지</u> 일대(297,679제곱미터)로 한다.	제2조(위치) ----- ----- <u>2</u> -----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삭제조항) 5. “단체”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 7. (삭제조항) 8. “시설”이란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u>썰매장</u> 을 말한다.	제4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명</u> ----- <u>같은</u> ----- ----- 5. ----- ----- <u>썰매장, 축제극장</u> -----
제7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 ④ (생략) ⑤ 그날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다음 날 10시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시설이용료) ① ----- ----- <u>같되,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u> ② <u>축제극장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식은 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 -----



[별표 1] 시설이용료

가. 주차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30분 이내	10분 초과당	1일 주차	비고
소형차	500	200	5,000	
대형차	1,000	400	10,000	

※ 소형차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대형차 : 승합차(버스), 화물차(트럭)

- 1)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 2) 1회 누적시간은 24시간으로 본다.

나. 야영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일반텐트(노지)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비고
변경	6,000	10,000	25,000	1박 기준

다. 썰매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개인	5,000	6,000	7,000
단체	4,000	5,000	6,000

라. 축제극장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이용료
오전	09:00 ~ 12:00	50,000
오후	14:00 ~ 17:00	50,000



[별지 제1호의2서식]

##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변경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사무실	
				자택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시설사용				
	부속설비				
	기 타				
변 경 사 유					
<p>「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귀하</p>					



[별지 제1호의3서식]

##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취소 신청서

공연 (행사)명			
사용일자		사용장소	
취소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